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73

발의연월일: 2025. 6. 5.

발 의 자:이양수·이종배·박덕흠

박준태 • 서천호 • 김장겸

조지연 · 강대식 · 조경태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업무추진비 등 손금 계산을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경제 상황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특례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	<u>2028년 12월 31일</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			
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지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u> <u>12월 31일</u>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7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u>2028년 1</u>
2월 31일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12 는 이 는
<u> 12 년 - 61 년</u>
2. <u>2030년 1월 1일</u>
2. <u>2030년 1월 1일</u>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u>2028</u>
년 12월 31일
<u>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u>
<u> 2월 31일</u>
② 2030년 1월 1일